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 0 2 3 . 2 . 1 . (수)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72
제출일자 : 2023. 1. 20.
회부일자 : 2023. 1. 26.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 이유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유사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경북문화재단 및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통합운영하고자 함.
-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업무, 기능, 조직 및 인력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나. 경북문화재단의 수행사업에 융복합 콘텐츠산업을 추가함
(안 제3조)
- 다. 경북문화재단의 임원의 수, 종류, 임기, 임면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경북문화재단의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6조)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심사 비대상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부패유발유인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2.12.15. ~ 2023.1.4.(예고결과: 의견없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 한 바 있으며,
- 경북도에서도 정부 차원의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 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문화관광분야의 유사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경북문화재단'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목적규정에 지역 문화예술과 융복합 콘텐츠산업 진흥을 명시하여 문화재단의 설립취지에 콘텐츠 산업 진흥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3조 사업조항에 제3의2호에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던 융복합 콘텐츠산업을 추가하여 문화재단에서 콘텐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행조례>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사업

- 가.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자문 및 지원
- 다.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 라.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
- 마.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지원
- 바.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 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 아. 문화예술인 복지 및 문화예술분야 기부·후원 관련 사업

2.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육성사업

- 가.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의 보호, 보존 관리
- 나.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 다. 문화유산의 보존 처리 및 수장 전시

3. 한복진흥사업

- 가. 한복을 주제로 한 문화산업 콘텐츠 발굴 및 확산사업
- 나. 한복 섬유산업 활성화 사업
- 다. 전통한복 기술 컨설팅 및 연구개발사업
- 라. 한류콘텐츠로서의 한복문화상품 개발

4.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안 제5조에서 문화재단의 임원의 수, 종류, 임기, 임면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두 기관간 통합에 따른 기관

구성을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6조는 문화재단의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합초기 각 기관간 양립에 따른 과도기 현상과 재단 대표권에 대하여 이사장과 대표이사로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 부칙 제1조에서 조례를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의 구조개혁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부칙 제2조에서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폐지조항을 두었고, 부칙 제3조에서는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사항을 두어 기관통합과 조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종합 의견

- 경북문화재단은 경북의 역사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1일 설립되었으며,
-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경북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경북 문화산업을 지식기반 첨단산업 및 융복합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0일 설립된 기관입니다.
- 그동안, 경북도의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7월 19일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안)’을 통보하고, 실국별 통합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문화, 산업, 교육, 복지, 호국 분야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 중 문화분야 구조개혁안인 본 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만 의회로 제출(2023.1.20.) 되었습니다1).
- 이 두기관의 통합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 혁신 정책에 부응하고, 경북도차원의 자체 구조개혁을 위해 먼저 문화분야의 양 기관의 통합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다만, 경북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순수 예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진흥법」2)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3)에 근거하여 순수예술보다는 산업지원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경북문화재단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설립취지가 상이 하고, 통합으로 인해 2019년 당시 콘텐츠진흥원의 수행사업이 ‘문화콘텐츠’사업에서 ‘융복합콘텐츠산업’으로 확대되어

1)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분야 중 문화분야를 제외한, 산업분야 1.2차 회의개최(2022.7월 8월) 및 통합방향 설명(2022년 10월), 교육분야, 1차회의(2022년 8월) 이후 중장기추진 결정. 복지분야 1차회의(2022년 8월), 설명회 개최(2022년 9월), 호국분야, 1차회의(2022.8월) 이후 관계기관 및 도의회 반대의견으로 장기검토과제로 전환됨.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개정⁴⁾이 이루어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경북도내 콘텐츠 산업의 위축과 국비사업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두 기관의 통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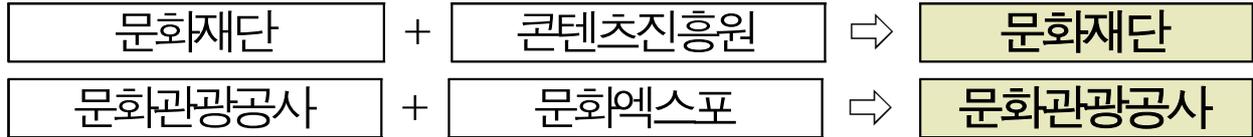
붙임 1. 경북문화재단,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기관 현황

붙임 2.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현황

4) 2011년 9월 26일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2011년 11월 20일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2019년 조례 개정,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문화콘텐츠산업’중심에서 ‘융복합 콘텐츠산업’으로 사업범위 확대함. 사업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문화산업 중심’에서 정보산업과 창조산업까지 포함하는 ‘정보문화산업중심’으로 사업 분야 확대.

구분	경북문화재단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형태	지방출자·출연기관 中 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지방출자·출연기관 中 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목적	경상북도의 역사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도민의 창조적인 문화 활동 지원	콘텐츠산업 경북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경북 문화산업을 지식기반 첨단산업 및 융복합콘텐츠 산업으로 육성
설립일	2019. 7. 11. ※ 최초설립 : '97. 12. 11.(경상북도문화재단연구원)	2011.12.20.
주무기관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상북도
설립자본금	1억원(경북도)	5천만원(경북도)
대표자	대표이사(이희범)	원장(이종수)
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 125, ◆ 문화재단연구원 : 영천시 금호읍 원제2길 38 ◆ 한복진흥원 : 상주시 함창읍 무운로 1591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
관련법령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조례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직 (정원/현원)	1처 1본부 2원 2실 11팀 (66명/62명 <파견공무원 3명 포함>)	1본부 6팀 35명/35명
주요시설		5동(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동남권센터, 음악창작소, 웹툰캠퍼스 등)
예산('22년)	273억원	103억원

(2023. 1월 현재)

○ **(문화)** 문화재단, 문화관광공사 중심으로 각각 통합

-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통합추진 T/F 구성(8. 5.)
- ▶ 경북문화재단, 경북콘텐츠진흥원 통합추진 T/F팀 1차 회의(8. 8.)
- ▶ 제33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특위 구조개혁(안) 보고(8. 25.)
- ▶ 통합기관 조직운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0. 25.)
- ▶ 통합 세부 추진계획 수립(11. 7.)
- ▶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관계기관 설명회 개최(11. 9.)
-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22. 11. 10.~11. 30.)

○ **(산업)** 소재부품 분야 기능통합, 바이오 분야 통합

- ▶ 산업분야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8. 8.)
- ▶ T/F 2차 회의(8. 29.)·3차 회의 개최(9. 16.)
- ▶ 연구원 통합방향 산업부(기계항공로봇과) 설명(10. 5.)

○ **(교육)** 경북도립대학교 내 부속기관화

- 경북도립대가 도민 대상 각종 연수(교육) 기능 총괄 수행

⇒ **도립대학교 4년제 전환 계획과 연계 '증장기 추진' 결정**

- ▶ 교육분야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8. 4.)

○ **(복지) 청소년육성재단을 행복재단 내 본부로 통합**



- 유사 서비스(사회복지·보건서비스·청소년복지) 기능 통합

⇒ **최종 추진 여부 확정(1월), 조례 개정 추진(2월)**

- ▶ 복지분야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8. 16.)
- ▶ 유관기관 설명회 개최(9. 15.)

○ **(호국) 독립운동기념관을 중심으로 독도재단 통합**



⇒ **기관 상징성 및 상이한 업무성격 고려... '장기 검토'**

⇒ **독도재단 현행 유지, 독립운동기념관 기능 확대* 검토**

- ▶ 국가보훈처 사전검토 요청(7. 25.) - 조건부 동의
- ▶ 관련부서·기관 1차 회의 개최(8.16.) 및 T/F 구성(8. 26.)
- ▶ 안동시의회 통합 반대 의견 제시(8. 22.)
- ▶ 통합 관련 이해관계자(안동시) 회의 개최(8. 24.)
- ▶ 11개 기관(민간단체 6, 연구소 3, 학회 2) 반대의견 제출
- ▶ 도의회(남진복, 한창화, 서석영 의원) 반대의견 제시

T/F 검토(안)-2023. 1월 기준

분 야	대상기관	통합기관명
문화	문화관광공사	문화관광공사
	문화엑스포	
	문화재단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국학진흥원	국학진흥원	
산 업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바이오재단
	환동해산업연구원	
복 지	행복재단	경북행복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개발원
	의료원(포항, 안동, 김천)	의료원(경북대 위탁운영)
교 육	인재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	경북도립대학교 ※ 중장기 추진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사관학교)	
호 국	독립운동기념관	경북호국재단 ※ 장기검토
	독도재단	
연 구 (별도추진)	대구경북연구원	경북연구원